

경기도 고시 제2025-478호

화성발안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공고

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33조 규정에 따라 「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. 12. 30.
경기도지사

1. 변경내용(변경)

- 관리기관 변경(화성도시공사→화성시(위탁기관:화성도시공사))
- 산업시설용지 업종추가 :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C30)추가 반영

2. 산업단지 개요(변경)

- 기정

가. 관리기관 : 화성도시공사

- 변경

가. 관리기관 : 화성시(위탁기관:화성도시공사)

나. 조성목적(변경없음)

-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경기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 수행
- 수도권 내 성장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-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 공급 도모

다. 추진경위(변경)

- 1992. 9. 22. :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유도권 개발계획 고시
- 1995. 8. 12. : 발안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착수
- 1997. 7. 22. : 산업정책심의회 개최(건설교통부)
- 1997. 9. 1. :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, 사업시행자 지정(경기도)
- 1999. 12. 23. : 에너지사용계획 심의(에너지관리공단)
- 2000. 2. 3. :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(한국토지공사, 산업자원부)
- 2001. 10. 24. :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(한국토지공사, 환경부)
- 2001. 12. 13. 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(경기도)
- 2001. 12. 14. : 용지보상 착수
- 2002. 9. 4. : 공사 착공
- 2003. 5. 29. : 산업시설용지 1차 공급
- 2003. 6. 2. :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(경기도)
- 2004. 6. 7. :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)
- 2004. 6. 21. : 산업시설용지 2차 공급
- 2004. 6. 30. : 지구 지정(개발계획)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)
- 2004. 9. 15. : 지원시설용지 등 공급
- 2005. 4. 13. : 임대산업시설용지 공급
- 2005. 5. 2. :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)
- 2005. 5. 17. : 폐기물처리장 공급
- 2006. 1. 4. : 지구 지정(개발계획)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)
- 2006. 5. 18. : 지원시설용지 등 공급
- 2007. 1. 8. : 지구 지정(개발계획)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, 조성사업 준공인가(경기도)
- 2007. 4. 16. : 산업시설용지 3차 공급
- 2012. 7. 30. : 발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)
- 2012. 8. 30. : 발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(경기도)
- 2015. 5. 21. : 발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(경기도)

- 2015. 11. 9. : 발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)
- 2016. 3. 8. : 발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(경기도고시2016-5052호)
- 2019. 4. 4. : 발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1단계 준공인가 공고(경기도공고제2019-5334호)
- 2020. 1. 17. :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(한국토지공사, 환경부)
- 2021. 7. 19. : 발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(경기도고시2021-5129호)
- 2023. 10. 18. : 발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)(경기도고시2023-279호)

라. 분양현황(변경없음)

구분	분양대상 (m ²)	분양현황(m ²)			조성기간	조성기관
		계	분양	미분양		
계	1,340,578.3	1,340,578.3	1,339,563.4	1,014.9		
산업시설구역	1,292,138.1	1,292,138.1	1,292,138.1	-	'97 ~ '06	한국토지 주택공사
지원시설구역	48,440.2	48,440.2	47,425.3	1,014.9		

※ 산업시설구역: 산업용지(1,268,052.1m²), 폐기물처리용지(24,086m²)

지원시설구역: 지원용지(37,704.9m²), 주차장용지(10,735.3m²)

마. 입주현황(변경)

-기정

구분	입주업체수			면적(m ²)		
	계	제조업	기타	계	제조업	기타
2021년 5월 현재	489	392	97	1,292,138.1	1,237,095.4	55,042.7
향후계획	-	-	-	-	-	-

-변경

구분	입주업체수			면적(m ²)		
	계	제조업	기타	계	제조업	기타
2025년 8월 현재	542	394	148	1,292,138.1	1,237,095.4	55,042.7
향후계획	-	-	-	-	-	-

※ 업체 수는 향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바. 입지여건(변경)

-기정

시설명	총계획	사업기간	시행기관
도로(m ²)	270,034.4	'02 ~ '05	한국토지공사
용수(m ³ /일)	12,000	"	한국토지공사
전력(KVA)	149,534	"	한국전력공사
통신(회선)	2,715	"	한국통신공사
오·폐수처리장(m ³ /일)	5,187	"	한국토지공사
폐기물처리장(m ³)	24,086	'05 ~ '08	(주)진흥중공업

-변경

시설명	총계획	사업기간	시행기관
도로(m ²)	270,441.8	'02 ~ '05	한국토지공사
용수(m ³ /일)	13,281	"	한국토지공사
전력(KVA)	132,363	"	한국전력공사
통신(회선)	2,715	"	한국통신공사
오·폐수처리장(m ³ /일)	5,602	"	한국토지공사
폐기물처리장(m ³)	24,086	'05 ~ '08	(주)진흥중공업

※ 경기도고시 제2023-279호 발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

3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

가. 기본방향(변경없음)

-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
- 전기·전자 등의 조립 가공업종, 첨단업종, 의약산업 관련 업종의 원활한 입지 제공과 고부가가치 생산기업 유치 및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업체 등을 유치하여 경기 지역의 중추거점 산업 단지로 육성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(변경)

1) 용도별 구역면적(변경)

-기정

총면적(m ²)	산업시설구역(m ²)	지원시설구역(m ²)	공공시설구역(m ²)	녹지구역(m ²)
1,825,431.2 (100%)	1,292,138.1 (70.8%)	48,440.2 (2.7%)	305,662.8 (16.7%)	179,190.1 (9.8%)

-변경

총면적(m ²)	산업시설구역(m ²)	지원시설구역(m ²)	공공시설구역(m ²)	녹지구역(m ²)
1,825,483.0 (100%)	1,292,138.1 (70.8%)	48,440.2 (2.7%)	306,070.2 (16.7%)	178,834.5 (9.8%)

※ 용도별 구역 면적표 : [붙임 1-1]

※ 경기도고시 제2023-279호 발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

- 2) 탄소중립 및 신·재생에너지 관리(진설)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등에 의거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업체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 제조공정, 도시계획, 구조 고도화, 건물구조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한 경우 예외로 한다.
 - 관리기관은 공장 및 건축물 등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, 공장 및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한 입주사와 입주계약 체결 시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유무를 통지하고 승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- 3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- 가) 산업시설구역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집법”이라 한다.)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
 -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
 -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)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
 - **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발전 설비에 한함)**
- 나) 지원시설구역
-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8호,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 -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외 건축물 {단,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, 공장 등은 제외하며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<주유소>는 27-4블럭에 한한다.}
 - **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발전 설비에 한함)**
- ※ 「화성시 도시계획조례」 [별표8] : [붙임 1-2]
- ※ 지원시설구역 확장 구분도 : [붙임 1-3]
- 다) 공공시설구역: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
- **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발전 설비에 한함)**
- 라) 녹지구역: 녹지구역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설치 가능한 보육시설(시립어린이집 1개소)
- **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발전 설비에 한함)**
- 마) 상업시설용지
-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외 건축물{단, 단독주택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, 공장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제외하며, 공동주택*은 22-1 블럭에 한 한다.}
 - **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발전 설비에 한함)**
- ※ 공동주택*: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
- 4)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: [붙임 1-4]
- 다. 입주 관리계획(변경)
- 1) 입주대상 업종 (변경)
- 기정
- 가)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금속가공제품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기타제품제조업(33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35),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, 부동산업(68), 연구 개발업(70), 전문서비스업(71),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(72),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3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
- ※ 관리계획 변경고시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업종에 대하여는 산업 단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주토록 허용

※ 입주업체가 업종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안일반산업단지내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 총 건축 연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종 추가 허용

나) 보관·창고·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업종

- 보관·창고업: 일반 창고업(52101), 냉장 및 냉동 창고업(52102), 기타 보관 및 창고업 (52109)
- 운송업: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(49311),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(49312)

다)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업종

라)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(태양력발전업에 한함)

- 변경

가)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금속가공제품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기타제품제조업(33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35),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, 부동산업(68), 연구 개발업(70), 전문서비스업(71),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(72),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3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

※ 관리계획 변경고시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업종에 대하여는 산업 단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주토록 허용

※ 입주업체가 업종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안일반산업단지내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 총 건축 연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종 추가 허용

나) 보관·창고·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업종

- 보관·창고업: 일반 창고업(52101), 냉장 및 냉동 창고업(52102), 기타 보관 및 창고업 (52109)
- 운송업: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(49311),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(49312)

다)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업종

라)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(태양력발전업에 한함)

2) 입주제한업종: 도금업(25922),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(25923)(변경없음)

단, 입주제한 고시전 분양받아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하여 운영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기 입주 계약 체결된 제조시설면적 범위내에서만 처분 또는 임대할 수 있음.(폐수종말처리장의 수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된 범위내에서 협의처리)

3) 입주자격(변경)

가) 산업시설구역

-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로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득한 자.
- 기타 발전업(35119)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.(단, 연료전지발전소에 한함.)
-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(태양력발전업에 한함)

나) 지원시설구역

-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에 의한 지원 기관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건축법 시행령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의한 시설중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(태양력발전업에 한함)

다) 공공시설구역

-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(태양력발전업에 한함)

라) 녹지구역

-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(태양력발전업에 한함)

1) 입주절차(변경없음)

-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

라. 업종별 배치계획(변경)

1) 세부 배치계획(변경)

- 기정

	구분	면적	구성비	비고
	계	1,292,138.1	100%	
	소계	1,268,052.1	98.1%	
산업시설 용도	금속가공제품(25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	386,190.6	29.9%	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	300,840.4	23.3%	
	기타제품제조업(33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	123,294.8	9.5%	
	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연구개발업(70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	426,769.6	33.0%	
	시스템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, 부동산업 (68), 전문서비스업(71),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(72),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3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	10,551.5	0.8%	
	전기/가스/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(35)	20,405.2	1.6%	
특정 용도	폐기물처리시설	24,086.0	1.9%	

- 변경

	구분	면적	구성비	비고
	계	1,292,138.1	100%	
	소계	1,268,052.1	98.1%	
산업시설 용도	금속가공제품(25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(30)	386,190.6	29.9%	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(30)	300,840.4	23.3%	
	기타제품제조업(33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, 자 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	123,294.8	9.5%	
	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연구개발업(70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(30)	426,769.6	33.0%	
	시스템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, 부동산업 (68), 전문서비스업(71),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(72),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3),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(132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(30)	10,551.5	0.8%	
	전기/가스/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(35)	20,405.2	1.6%	
특정 용도	폐기물처리시설	24,086.0	1.9%	

2) 배치기준(변경없음)

- 가) 업종별 블록화 배치
- 나) 관련 업종 인접 배치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 업종별로 배치하되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

3) 업종별 배치계획도 : [붙임 2]

마.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(변경없음)

1) 공장설립 지원

- 공장설립 업무 인·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

2) 생산활동 지원

-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입주업체의 원·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·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

3)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

-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

4) 지원시설 설치계획

-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어린이 관련 시설 및 은행 등

바. 사후관리계획: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

사.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

-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

[붙임 1-1] 용도별 구역 면적표(변경)

- 기정

구분	토지이용계획		관리기본계획			비 고
			관리 구역		제외구역	
	면적(m ²)	비율(%)	면적(m ²)	비율(%)	면적(m ²)	
합 계	1,839,046.2	100.0	1,825,431.2	100.0	13,615.0	
산업 시설 구역	소 계	1,292,138.1	70.3	1,292,138.1	70.8	
	산업시설용지	1,268,052.1	69.0	1,268,052.1	69.5	
	폐기물처리장	24,086.0	1.3	24,086.0	1.3	
지원 시설 구역	소 계	62,055.2	3.3	48,440.2	2.7	13,615.0
	상업시설용지	13,615.0	0.7			13,615.0
	지원시설용지	37,704.9	2.0	37,704.9	2.1	
	주차장	10,735.3	0.6	10,735.3	0.6	
공공 시설 구역	소 계	305,662.8	16.6	305,662.8	16.7	
	도로	270,034.4	14.7	270,034.4	14.8	
	폐수종말처리장	14,720.1	0.8	14,720.1	0.8	
	유수지	20,908.3	1.1	20,908.3	1.1	
녹지 구역	소 계	179,190.1	9.8	179,190.1	9.8	
	공원	57,995.8	3.2	57,995.8	3.2	
	녹지	121,194.3	6.6	121,194.3	6.6	

-변경

구분		토지이용계획		관리기본계획		비 고
		관리 구역		제외구역		
		면적(m ²)	비율(%)	면적(m ²)	비율(%)	면적(m ²)
	합 계	1,839,046.2	100.0	1,825,483.0	100.0	13,563.2
산업 시설 구역	소 계	1,292,138.1	70.3	1,292,138.1	70.8	
	산업시설용지	1,268,052.1	69.0	1,268,052.1	69.5	
	폐기물처리장	24,086.0	1.3	24,086.0	1.3	
지원 시설 구역	소 계	62,003.4	3.3	48,440.2	2.7	13,563.2
	상업시설용지	13,563.2	0.7			13,563.2
	지원시설용지	37,704.9	2.0	37,704.9	2.1	
	주차장	10,735.3	0.6	10,735.3	0.6	
공공 시설 구역	소 계	306,070.2	16.6	306,070.2	16.7	
	도로	270,441.8	14.7	270,441.8	14.8	
	폐수종말처리장	14,720.1	0.8	14,720.1	0.8	
	유수지	20,908.3	1.1	20,908.3	1.1	
녹지 구역	소 계	178,834.5	9.8	178,834.5	9.8	
	공원	57,995.8	3.2	57,995.8	3.2	
	녹지	120,838.7	6.6	120,838.7	6.6	

※ 경기도고시 제2023-279호 발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 및 면적오기 정정

[붙임 1-2]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[별표 8] (개정 2014. 12. 5)(변경없음)

‘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8조제8호 관련)’

1.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
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(1)부터 (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

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

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묘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 시설

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
1.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하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가목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,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,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
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,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,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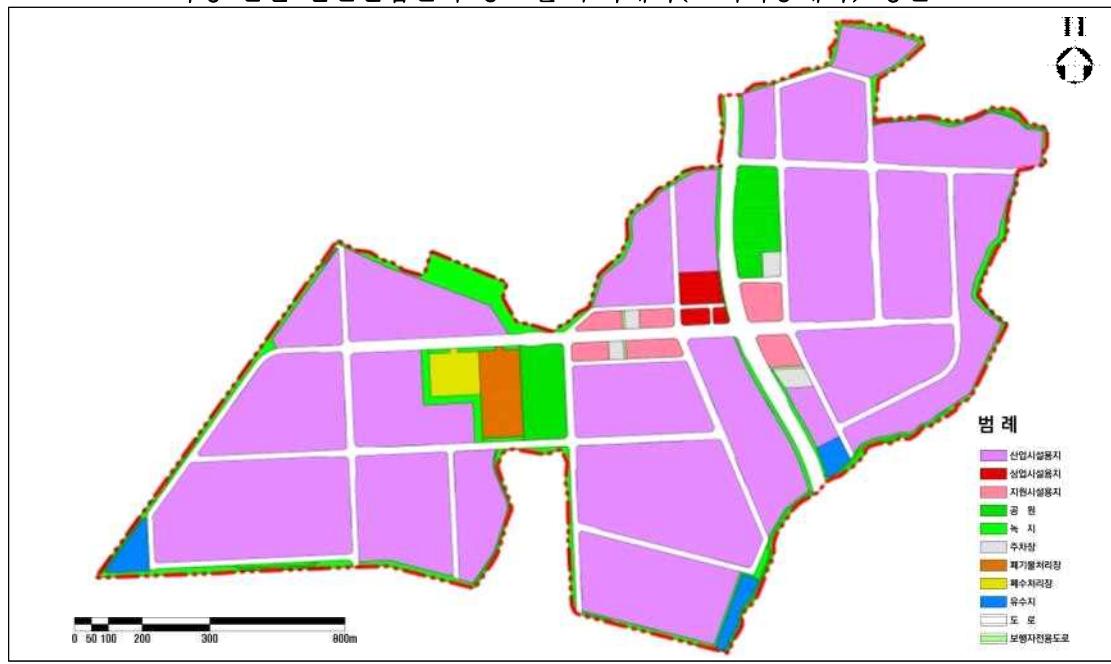
[붙임 1-3] (변경없음)

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획지구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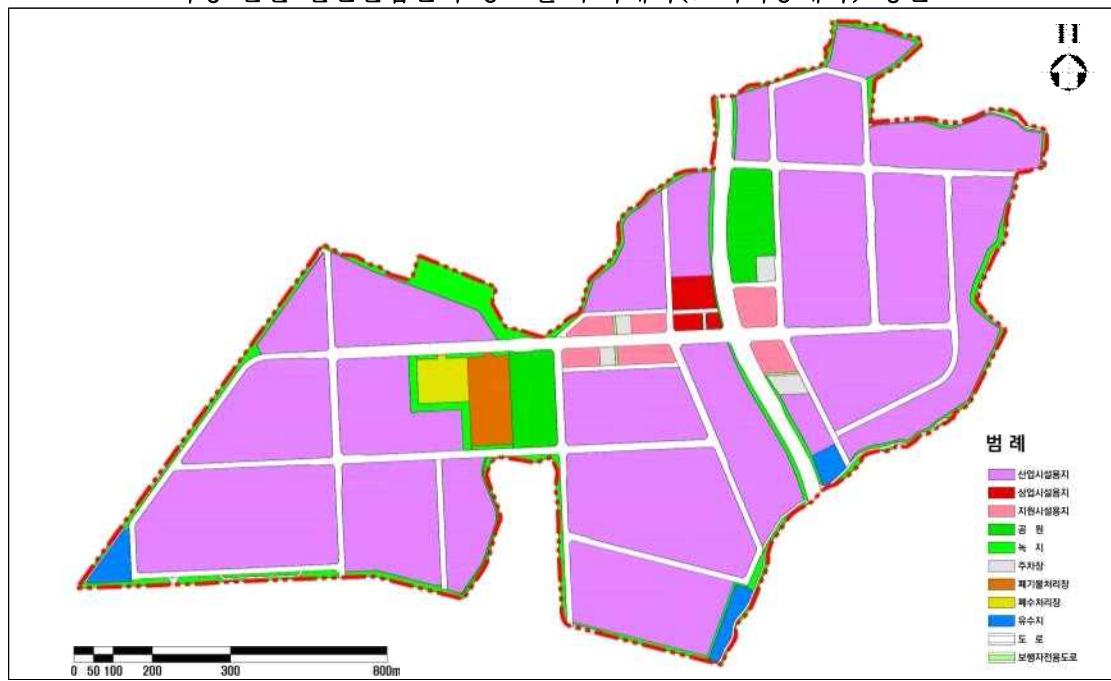
[붙임 1-4] (변경)
- 기정

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(토지이용계획) 평면도



- 변경

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(토지이용계획) 평면도



* 경기도고시 제2023-279호 발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 및 면적오기 정정

[붙임 2] (변경)
- 기정

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

범례

- 의료용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연구개발업(70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
- 전자부품, 컴퓨터, 평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
의료, 청발, 경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
- 전기기기/설비 및 공기조절설비업(35)
- 기타제품제조업(33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
- 금속가공제조업(25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
-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
- 건축기술, 연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(72)
-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3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

0 50 100 200 300 800m

- 변경

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

범례

- 의료용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연구개발업(70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, C130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- 전자부품, 컴퓨터, 평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C130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의료, 청발, 경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
- 전기기기/설비 및 공기조절설비업(35)
- 기타제품제조업(33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, C130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- 금속가공제조업(25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, C130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-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, C130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- 건축기술, 연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(72)
-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3), 기타 착물제품 제조업(13229)

0 50 100 200 300 800m